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. 11. 22 선고 2022가단5749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상헌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10. 18.

판 결 선 고 2022. 11. 22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. 4. 26. 체결된 매매계약을 26,915,65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26,915,6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C는 원고와 체결한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따라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였는데, 2022. 5. 6. 기준 C가 변제하지 못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 합계액은 26,915,654원 정도이다.

나. 원고는 2021. 9. 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차전316417호로 C에 대하여 미지급 신용카드 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, 위 법원은 2021. 9. 30.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, 위 지급명령은 2021. 11. 23. 확정되었다.

다. C는 2021. 4. 28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피고에게 2021. 4. 26.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(이하 관련 매매계약을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 한다).

라.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도의 적극재산이 없었고,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 등을 연체하는 상황이었으며,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은 215,000,000원이었다.

마. 한편, 피고는 2021. 6. 21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68,000,000원으로, 근저당권자를 D조합로, 채무자를 E(2022. 4. 20.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)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6호증, 을 제1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

1)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(대법원 1998. 4. 14.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).

2) 먼저 C가 2021. 4. 26.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, 2021. 4. 28.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데,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,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C의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

3)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의 다른 채무 존재 여부나 신용 및 재산상태를 알지 못하였으므로,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,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나 전득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나 전득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,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나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,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나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데(대법원 2006. 7. 4.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)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다.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방법(가액배상)

1)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,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,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(대법원 2001. 2. 9. 선고 2000다57139호 판결 참조).

2)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68,000,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이 사건에서의 원상회복방법은 가액배상에 의함이

타당하다.

3) 한편, 사해행위취소에 있어 가액배상은 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’, ‘우선변제권 있는 피담보채권액 등을 공제한 목적물의 가액’, ‘수익자가 취득한 이익’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지고, 배상하여야 할 가액의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인데, 앞서 살핀 여러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, 위 각 금액이 모두 원고가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범위인 26,915,654원과 적어도 같거나 이를 초과한다고 보이므로,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26,915,65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26,915,6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박영순

[별지]

목 록

(1동의 건물의 표시)

대구 수성구 F

(도로명주소)

대구 수성구 G

철근콘크리트구조, (철근)콘크리트지붕 6층 다세대주택

1층 계단실, 통신실 31.6132㎡

2층 다세대주택 160.0632㎡

3층 다세대주택 160.0632㎡

4층 다세대주택 160.0632㎡

5층 다세대주택 160.0632㎡

6층 오피스텔 205.3468㎡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대구광역시 수성구 F 대 503㎡
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제4층 H호 철근콘크리트구조 64.5172㎡

(대지권의 표시)

소유권대지권 503분의 47.4082

끝.

